

# 느슨한 가이드라인... 최악 황사에도 일하는 야외노동자

건설 현장·택배 노동자 등 호흡기 질병·알레르기 유발 위험 속 근무 고용부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 권고수준 그쳐 실효성 없어 현장 점검도 소홀...비상저감조치 세분화 등 노동자 건강권 보호해야

'일터'가 야외인 옥외작업자(야외 노동자)들이 황사·미세먼지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황사·초미세먼지의 지역 공습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옥외작업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세부적인 작업 가이드라인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 황사 경보가 내려던 29일, 바깥에서 일하며 생업을 이어가는 노동자들은 하루종일 미세먼지에 노출된 상태로 버텨내야 했다. 환경부의 장시간 실외활동을 자제하라는 권고와 고용노동부의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은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인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을 경우엔 업체의 마스크 지원이나 야외노동 중단, 당국의 현장 점검 등이 시행되지 않아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가.

이날 광주·전남을 덮친 황사 경보는 지난 2010년 11월 11일 이후 11년 만으로, 광주 도심과 전남 곳곳을 뿌옇게 만들었다.

환경부는 중앙황사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학교 실의 수업 금지, 민감 계층 피해 방지, 실외 근무자 마스크 착용 등의 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것을 요청했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광주·전남의 경우 황사·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는데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하철 공사현장이나 아파트, 소규모 전기 공사 현장 등에서는 별다른 지침 없이 공사가 진행됐다.

이날 오후 광주시 북구 운암동 한 전기 공사 현장에서 만난 A(45)씨는 "목도 갈갈하고 눈도 충혈되지만 마스크를 지급받는다거나 야외 작업을 조절하라는 등의 지침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폭염의 경우 온도별 대응책은 제시되고 있는 반면, 미세먼지는 구체적이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택배 배달업을 하는 B(53)씨도 "미세먼지가 심해도 물량 조절을 회사측이 하지 않는 이상 현장의 노동 강도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처 수준도 충족하지 못해 노동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9년 옥외 노동자들을 위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을 마련,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사업주의 대응 방안을 마련했지만 권고 수준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 지침대로라면 경보(초미세먼지 PM 2.5·150 $\mu\text{g}/\text{m}^3$  이상 또는 미세먼지 PM10·300 $\mu\text{g}/\text{m}^3$  이상)가 발령된 만큼 모든 노동자에게 휴식시간을 자주 제공하고 힘든 작업 일정은 연기하거나 작업 시간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또 환경부의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점 들어 고용노동부는 지침대로 따르고 있는 지 현장 점검도 나가지 않았다.

비상저감조치란 초미세먼지 PM 2.5 농도가 심각한 수준(50 $\mu\text{g}/\text{m}^3$ )에 이르는 경우 환경부의 통보에 지자체 장이 내린다.



황사 경보가 발효된 29일 광주시 남구 방림동 한 건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미세먼지에 노출된 채 일을 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

구체적으로는 ▲당일 평균농도가 50 $\mu\text{g}/\text{m}^3$  초과이고, 다음날 예보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50 $\mu\text{g}/\text{m}^3$ 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당일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예보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50 $\mu\text{g}/\text{m}^3$ 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다음날 미세먼지 예보가 75 $\mu\text{g}/\text{m}^3$ 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등이다.

29일 만으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하지만 다음날 예보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는 게 환경부 입장이다. 또

초미세먼지보다 입자가 큰 미세먼지(PM10)와 미세먼지와 비슷한 입자를 가진 황사의 경우 아무리 농도가 높더라도 비상저감조치 발령되지 않는다.

환경단체와 노동계 등에서는 이같은 점을 들어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춰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더 세분화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 형태의 규정 대신, 노동시간을 줄이는 등 실질적 조치가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담당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현장 점검시 미세먼지 조치도 병행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지만, 적발보다는 현장지도와 계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미세먼지로 야외 노동자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지만 폭염과 같이 구체적인 대응책은 없는 형편"이라며 "일단 급한대로 미세먼지 고위험군을 선별해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정현복 광양시장 수사 착수

"개발정보 이용 재산증식했다" 국민청원 오르며 지역 이슈로 전남경찰 입건 조사 나서

정현복 광양시장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정 시장의 부동산을 이용한 재산 증식 관련 내용에 대한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는 29일 정 시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 시장과 가족이 보유한 광양 원도소 토지에 도로가 신설되고 아파트단지 등으로 개발되는 과정에서 이해 충돌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현복 광양시장 재산증식 의혹, 전수조사가 시급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지역 내 이슈로 떠올랐다.

청원 내용은 정 시장과 가족이 40여년 전부터 보유한 토지 일대에 도로가 개설되고 아파트 건립이 예정되면서 개발 정보를 이용해 재산 증식을 했다는 내용이다. 청원인은 "정 시장의 공직자 재산신고 상황을 볼 때 광양시 관내 주택단지 앞에 땅을 소유하게 된 배경과 재산증식 과정을 시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필히 전수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정 시장 가족이 소유한 땅 주변에는 지난해 10월부터 178m 길이의 2차선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공사는 소방도로 등이 없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진행됐으며 정 시장 토지 569 $\text{m}^2$  가운데 108 $\text{m}^2$ , 가족 토지 423 $\text{m}^2$  가운데 307 $\text{m}^2$ 가 수용돼 보상을 받았다.

정 시장은 또한 지난해 재개발 지역인 성향·도이 지구에 소유한 땅 두 필지(1704 $\text{m}^2$ , 350 $\text{m}^2$ )가 수용되면서 대토 대신 보상금을 미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민청원 내용을 바탕으로 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부패방지법 및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최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고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정 시장은 31억 1600만원을 신고해 지난해 27억500만원보다 4억원 이상 늘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갑질에 초과근무 허위 청구 등 직권 남용으로 감봉 징계 제 잘못 모르는 경찰관...소송했다 패소

출근하기 위해 이미 출근한 직원에게 태워달라며 심부름을 시키고 초과 근무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입력하도록 지시하는 하면, 민간인 휴대전화 증거분석을 개인적으로 의뢰하는 등 부당한 업무 처리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박현)는 A경찰이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경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A경찰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전남경찰청에 근무하면서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거나 직권 남용 등의 비위 행위로 징계위원회를 거쳐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아 소송을 냈었다.

A경찰은 소속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욕설을 퍼붓고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걸 보고서라고 만들었어? 정신 안 차려, 너 몸통이 필요하냐'는 폭언을 했고 주말에 하급자에게 일방적으로 업무지시를 하면서 욕설을 하는가 하면, 갑질 행위를 상관에게 지적받은 뒤 '당사자는 살아남아도 내구보살자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 몰라'라며 위협적 언행을 했다는 게 경찰 조사 내용이다.

A 경찰은 개인적으로 의뢰받은 스마트폰에 대한 증거 분석을 직원들에게 시키는가 하면, 허위로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토록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며 "공무원으로 성실·복종·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데 A 경찰은 비위 행위를 무마하려고 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